

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7. 6. 29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6월 15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7년 6월 1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2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위원회(2007. 6. 29)
상정, 심사,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전산정보과장 정 원 배

가. 제안이유

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,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마일리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홈페이지의 갱신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 제정 골자

- (1) 정의를 보완하고 추가함 (안 제2조)
- (2)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및 관련 규정 등에 근거한 공개여부 결정 규정을 마련함 (안 제8조)

- (3)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(안 제14조의2)
- (4) 구민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하고자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(안 제14조의3)
- (5) 홈페이지를 통한 세금 등의 납부에 필요한 제도 및 시스템 마련과 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(안 제14조의4)
- (6)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정정보의 갱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와 감면기준을 마련함
(안 제14조의5, 안 제14조의6)
- (7)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규정과 예외사항 등을 정함 (안 제18조)
- (8) 마일리지의 부여기준을 정함 (안 별표 1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동 건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 제정된 동 조례를 구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민들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신설된 안 제14조의3에서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 하도록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적용되는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전자정부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안 제14조의5를 신설하여 홈페이지의 갱신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홈페이지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문 중 일부 불합리한 자구와 2007년 1월 3일 「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「전자정부법」으로 법명이 변경된 것으로 사료됨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	
번호	

제안년월일 : 2007. 6. 29

제안자 : 행정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2007년 1월 3일 「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이 「전자정부법」으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에 변경된 법명을 적용토록 수정하고, 본문 중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골자..

- 「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을 「전자정부법」으로 수정함.(안 제9조제1항,안 제14조의5제1항)

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1항중 “정보와 관련하여 ” 를 “정보가” 로, “정보에 대하여 공개를” 을 “ 경우 정보공개를” 로 한다.

안 제9조제1항중 “ 「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” 을 “ 「전자정부법」 ” 으로 한다.

안 제12조제2항중 “의하여 실명에 의한” 을 “의하여 실명으로” 로 한다.

안 제14조의5제1항중 “ 「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” 을 “ 「전자정부법」 ” 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수정안 대비표)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8조(홈페이지 자료제공)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. 단,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8조(정보공개청구) ①이용자는 구청장에게 제5조 제3항에 의한 <u>정보와 관련하여</u>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은 <u>정보에 대하여 공개를</u>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8조(정보공개청구) ①_____정보가 _____경우 정보공개를 _____.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9조(사이버 민원실 설치·운영)①구청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전자민원창구의 설치·운영)①구청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「전자정부 구현을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전자민원창구의 설치·운영)①_____「전자정부법」_____.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12조(민원상담 기능 제공) ①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<신설></p>	<p>제12조(민원상담) ①(생략)</p> <p>②민원상담은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실명에 의한 상담등록을 한 민원사항에 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한다.</p> <p>제14조의5(광고유치) ①구청장은 「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정정보의 갱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상업적 광고를 유치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(민원상담) ①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_____ _____ 의하여 실명으로 _____.</p> <p>제14조의5(광고유치)①_____ 「전자정부법」 _____</p>